

「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1월 1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1월 26일

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방 주 문

나. 제안이유

- 공공성과 심미성을 지닌 건축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,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 건립 과정에 참여시켜,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로 지역 명소화 및 지역민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개정(안 제1조)
- 민간전문가 용어의 뜻 추가(안 제2조)
 - 공공디자이너(안 제1호) 및 관련 정의(안 제4호, 신설)
- 민간전문가 자격 및 위촉대상자 범위 확대(안 제3조)
- 공공디자이너 업무범위 추가(안 제4조제3항, 신설)

- 민간전문가 자문대상 확대(안 제5조제4호, 신설)
- 민간전문가 자문 절차 간소화(안 제6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건축기본법」, 「건축기본법 시행령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공공성과 심미성을 지닌 건축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범위에 공공디자이너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 건립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, 건축적 기능과 아름다운 조형성 간의 균형을 강화하고, 공공건축물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구미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됨.
- 집행기관은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을 신중히 선정해야 하며, 구미시의 공공건축물이 안전하면서도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